2021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간석동 173-2번지 주상복합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		심의일자	2021. 9.30.(서면심의)				
 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장명관	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번 173-2외 10필지 대지면적 5,922.2㎡		² 간석동 관련지번 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	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3,298.03㎡		건폐율 55.69%		층수 지하 : 4층/ 지상 : 29층	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2동				
	최고높이 102.13m		용적률	률 508.44%	연면적 합계 45,863.4969 m²	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	
	(계획분야)관련	○ 아파트 공용복도의 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것 ○ 전기자동차(완속충전)와 일반자동차 주차가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주차장을 배 이상 확보할 것							
	(토목분야)관련	○ 조치계획에 따른 추가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설계 도서를 제출하기 바람							
	(소방분야)관련	O 향후 성능위주설계 신고 시 보고서에 사전검토 심의결과 의견에 대한 반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 및 도서 제시 바람		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	

2021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불로2지구 도시개발사업 9블록 공동주택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경	!천광역시 도경관건축과			2021. 9.30.(서면심의)				
건축종별	[○]신축, []증축, []대수선, []기타		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차성근								
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								
대지현황	지번 82번지 57필지		관련지번						
	대지면적 36,170.7㎡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6,327.075m²		건폐율	£ 17.49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25층	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(벽식구조 및 RC구조)		│ 건축물 농수 8동				
	최고높이 70.45m		용적률 227.91%		연면적 합계 116,792.3861 m²	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	
	(계획분야)관련	○ 동 내부 인동거리 적용여부 사업승인권자와 반드시 협의 요함 ○ 전기자동차주차(완속충전)와 일반자동차주차를 겸용하는 전기차 주 차대수를 확보할 것							
	(토목분야)관련	O 지반조사 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지하수위를 반영하여 실 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 도서를 제출하기 바람							
	(행정)사항	O 사전검토	트의견 변	반영할 것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	